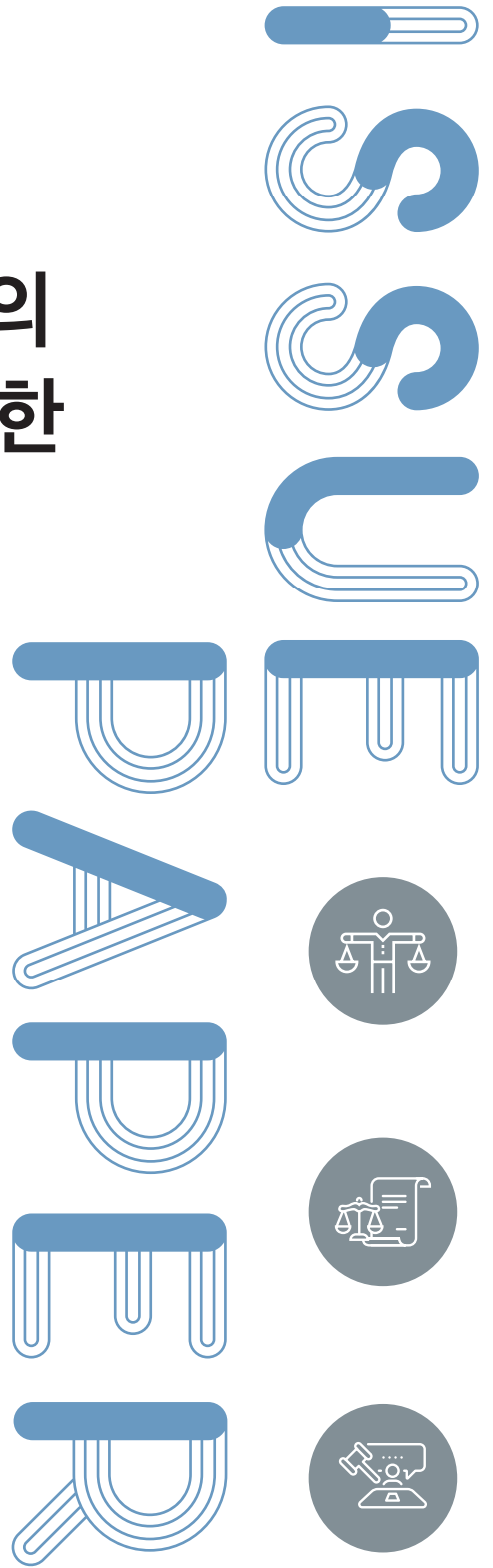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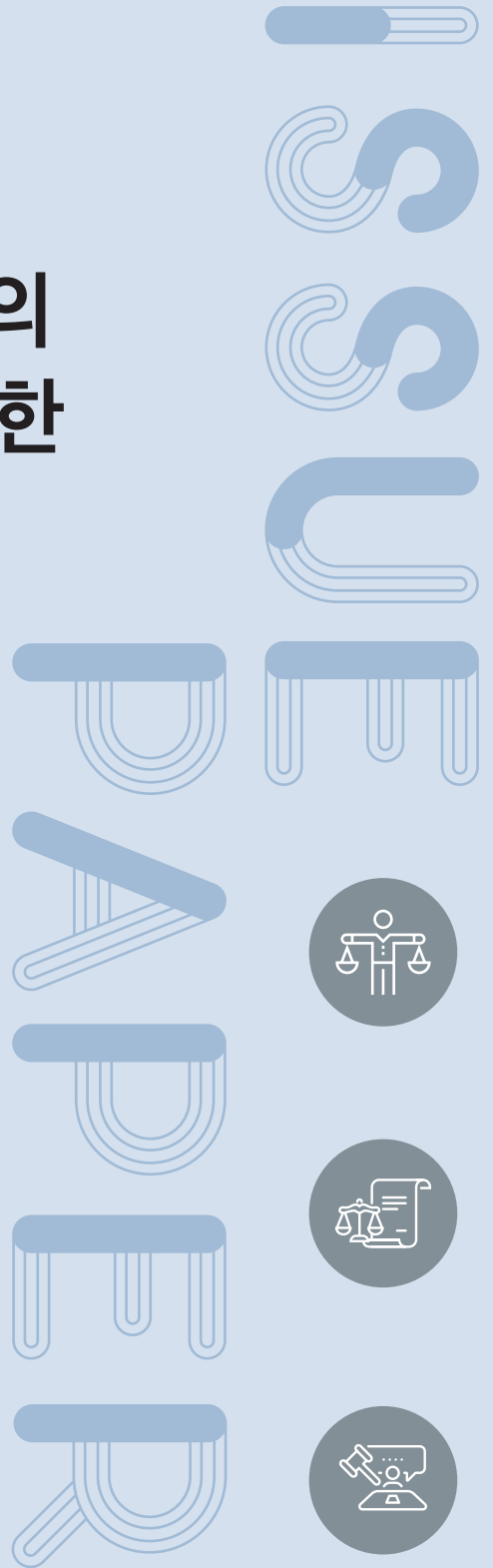
프랑스 코로나19 보건위기의 탈출관리를 위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의 사례연구

박인수



프랑스 코로나19 보건위기의 탈출관리를 위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의 사례연구

박인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CONTENTS

ISSUE
PAPER

요약문

5p

들어가는 말

Chapter

1

7p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목적 및 주요내용

Chapter

2

- 10 1.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목적
- 11 2.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주요내용

9p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 제1조에서 제4조에 대한
입법영향평가

Chapter

3

- 19 1. 현재의 법적 상황
- 27 2.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
- 28 3. 고려될 수 있는 선택 및
채택한 선택
- 31 4. 채택한 법규정에 대한
영향분석
- 32 5. 자문활동 및 적용방법

18p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Chapter

4

- 35 1. 프랑스 입법영향평가의 근거 및
입법영향평가서의 내용
- 37 2.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 제1조에서 제4조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서 검토

34p

맺음말

Chapter

5

39p

참고문헌

41p

프랑스 코로나19 보건위기의 탈출관리를 위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의 사례연구

박인수¹⁾

요약문

-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인류 전체의 건강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및 개인의 행동방식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 이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제도적 노력을 긴급하게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각국의 법제도적 노력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종교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의 측면에서 비판적 견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프랑스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종래의 국가긴급권 등에 대한 법체계가 아닌 임시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하나의 법체계인 보건긴급상태(état d'urgence sanitaire)를 창설하였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정도에 따라 관련 법제를 수시로 변경한 바 있음. 이와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및 일시적 소강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빈번한 법개정은 긴급성 및 상황적 필요성의 요청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입법의 질의 측면에서는 비판적으로 분석 및 검토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 글은 프랑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일시적 소강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영향평가서를 법률안 제1조에서 제4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음.
-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일시적 소강상태에 대처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에 신속히

1)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입법영향평가서 또한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음.

- 그러나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영향평가서는 전체적으로 양질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서술, 가능한 선택과 새로운 입법을 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적 기술, 채택한 법규정에 대한 치밀한 영향분석의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됨.
- 이와 같은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영향평가서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상황의 긴급성과 법률안의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률규정을 수용하였다는 점으로 일부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프랑스의 경우 법률안을 실제로 제출하는 정부부처가 입법영향평가서 작성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영향분석보다는 법률안 자체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제도적 결함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Chapter



들어가는 말

들어가는 말

-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인류 전체의 건강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및 개인의 행동방식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 이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제도적 노력을 긴급하게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각국의 법제도적 노력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종교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의 측면에서 비판적 견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프랑스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종래의 국가긴급권 등에 대한 법체계가 아닌 새로운 하나의 법체계인 보건긴급상태(état d'urgence sanitaire)를 창설하였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정도에 따라 관련 법제를 수시로 변경한 바 있음. 이와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및 일시적 소강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빈번한 법개정은 긴급성 및 상황적 필요성의 요청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입법의 질의 측면에서는 비판적으로 분석 및 검토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 글은 프랑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일시적 소강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영향평가서를 법률안 제1조에서 제4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Chapter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목적 및 주요내용

- 10 1.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목적
 - 11 2.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주요내용
-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목적 및 주요내용

1.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목적

- 프랑스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건긴급상태(état d'urgence sanitaire) 체제가 2020년 3월 23일 법률(LOI n° 2020-290 du 23 mars 2020 d'urgence pour faire face à l'épidémie de covid-19)²⁾에 의해 창설되었음. 2020년 10월 17일 이후 이 보건긴급상태(état d'urgence sanitaire)는 그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체제였지만, 현재까지 보건상태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여러 가지 보건질서의 유지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음.

※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프랑스 헌법 및 법률의 규정

- 프랑스의 경우 2020년 보건긴급상태(état d'urgence sanitaire)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긴급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헌법 및 법률적 차원의 장치가 존재했음. 따라서 2020년에 도입된 보건긴급상태는 종래의 법적 장치와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프랑스 헌법 제16조³⁾는 국가긴급권을 규정하고 있음. 프랑스 헌법상 국가긴급권은 공화국의 제도, 국가의 독립, 영토의 완전성,

2) <https://www.legifrance.gouv.fr/dossierlegislatif/JORFDOLE000041736258/>, 2022. 07. 20. 방문.

3) 프랑스 헌법 제16조 “① 공화국의 제도·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제협약의 집행이 심각하고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헌법에 의한 공권력의 정상적인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에 대통령은 수상·양원의 의장·헌법재판소장과 공식협의를 거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대통령은 교서를 통해 국민에게 이를 알린다.

③ 이러한 조치는 헌법에 기초한 공권력이 그 직무를 완수할 수 있는 수단을 최단기에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협의한다.

④ 의회는 자동으로 소집된다.

⑤ 하원은 비상권한의 발동기간 중에는 해산될 수 없다.

⑥ 비상권한 발동기간이 30일이 지나면 하원의장이나 상원의장 또는 60인의 하원의원이나 60인의 상원의원은 제1항에서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단 기간 내에 의견을 공표한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권한이 발동된 후 60일이 되면 당연히 이와 같은 검토에 착수하며 동일한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60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국제협약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위협이 헌법에 의한 공권력의 정상적인 기능의 정지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수상, 양원의장, 헌법재판소의 자문을 구한 다음에 상황이 요청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임.⁴⁾

- 프랑스 헌법 제36조⁵⁾에 근거한 계엄령은 외국과의 교전이나 무장반란으로 인한 급박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일반 행정권을 군으로 이양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국무회의에서 발하며, 계엄기간이 12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회만이 법률에 의하여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⁶⁾
- 1955년 4월 3일 법률의 비상사태는 계엄에 비하여 그 상황의 중대성과 긴급성이 약한 국가적 위난이 닥쳤을 때 경찰력을 확대하여 공공질서를 수호하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임.⁷⁾

- 그런데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된 현재 프랑스의 보건상황은 백신정책 및 억제정책의 영향에 따라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치를 일정부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전파되고, 프랑스의 의료시스템이 강력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프랑스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주의가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2020년 여름의 초기에 실시된 임시적 체제(régime transitoire)의 경험을 따르고, 마크롱 대통령의 2021년 3월 31일 연설의 기본적 방향에 부합하게 2021년 6월부터 점진적으로 보건긴급 상태로부터 탈출을 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재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건질서 유지조치의 완화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이 제출되었음.⁸⁾

2.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주요내용

-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은 형식적으로는 8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존에 있는 법전(Code) - 특히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⁹⁾ - 또는 법규정을 개정 및 추가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아래에서는 이들 규정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함.

4) 한동훈, 프랑스 헌법상 권력구조, 헌법재판연구원, 2020, 72-75면 참조.

5) 프랑스 헌법 제36조 “① 계엄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데크레로 행하여진다.

② 계엄기간이 12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회에서만 그 연장을 승인 할 수 있다.”

6) 강지은, 프랑스의 비상사태(État d'urgence) - 비상사태의 선포 및 그에 따른 행정적 조치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5집 제4호, 2017, 259면.

7) 위의 책, 260면.

8) https://www.legifrance.gouv.fr/dossierlegislatif/JORFDOLE000043426698/?detailType=EXPOSE_MOTIFS&detailId=, 2022. 07. 20. 방문.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은 나중에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LOI n° 2021-689 du 31 mai 2021 relative à la gestion de la sortie de crise sanitaire)이 됨. 이와 관련된 하원 및 상원의 토의상황에 대해서는 <https://www.legifrance.gouv.fr/dossierlegislatif/JORFDOLE000043426698/> 참조, 2020. 07. 20. 방문.

9) 프랑스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의 원문은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texte_lc/LEGITEXT000006072665?etatTexte=VIGUEUR 참조.

-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목적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제1조는 2020년 7월 9일 법률(LOI n° 2020-856 du 9 juillet 2020 organisant la sortie de l'état d'urgence sanitaire)이 규정한 태도를 수용하면서 2021년 6월 2일에서 2021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보건긴급상태의 탈출을 관리하는 체제를 규정하였음.

즉 제1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대중을 수용하는 시설 및 공공도로에서의 모임에 관한 수상의 행정명령조치(mesures réglementaires)를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 제L.3131-15조의 적용에 따라 취해진 것과 동일한 조건 및 요청에 따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였음. 그리고 이동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동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프랑스의 지방, 코르시카 또는 해외령을 목적지로 하거나 출발지로 하는 이동의 경우, 백신접종을 증명하거나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하거나, 또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검진결과를 제시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하였음.

※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 제1조

I. 2021년 6월 2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수상은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의 보고에 근거한 데크레를 통해 공중보건을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만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람 및 차량의 왕래, 공동교통수단에 대한 접근 및 그 사용조건을 규제하거나, 바이러스의 활발한 전파가 확인된 일부분의 지역의 경우에는 금지할 수 있으며, 항공 및 선박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왕래가 가족적, 직업적 및 건강의 필요에 엄격하게도 필수적인 것을 조건으로, 사람의 이동 및 교통수단의 왕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주에서 수상은 프랑스의 지방, 코르시카 또는 헌법 제72-3조¹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를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왕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바이러스 검사시험의 결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회복되었다는 증명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주거용 건물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면서, 대중을 수용하는 하나 또는 여러 부류의 시설 및 집회장소의 대중에 대한 개방 - 접근 및 해당 장소에 있는 조건이 포함됨 - 을 규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주에서 대중을 수용하는 하나 또는 여러 부류의 시설 및 집회장소가 그 성격에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될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의 실시를 보장할 수 없는 활동을 수용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적극적 전파가 확인된 일정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시설 및 장소에 대한 임시적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국내안전법전 제L.211-2조 및 제L.21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의 사람의 집합, 집회 및 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

II. 수상이 I.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할 때, 수상은 지역적으로 권한이 있는 국가의 대표자에게 이들 조치의 적용을 위한 일체의 일 반적 또는 개별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I.에서 규정한 조치들이 도(département)의 영역을 넘지 않는 지리적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할 때, 수상은 도의 국가의 대표자 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도의 국가의 대표자는 레지옹 보건기구의 장의 의견 을 들은 후에 결정을 내린다. 레지옹 보건기구의 장의 의견은 공개된다.
뿐만 아니라, 수상은 도의 국가의 대표자에게 ...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대중을 수용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0) 프랑스 헌법 제72-3조 “① 공화국은 자유·평등·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여 해외영토 주민을 프랑스 국민으로 인정한다.
② 과테루프, 기안, 마르티니크, 레유니옹, 마이요트, 생바르텔레미, 생마르탱, 생피에르-에-미끄롱, 왈리스 후투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도, 해외레지옹 및 제73조 마지막 항의 적용에 따라 창설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제73조를 통해 적용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74조의 적용을 받는다.
③ 뉴벨칼레도니아의 지위는 제13장에서 규정한다.
④ 프랑스 남방남극령 및 끌리페르통의 법제와 특수한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 III. 본조의 적용에 따른 조치들은 보건위험에 대해 엄격하게 비례적이어야 하며, 시간 및 장소적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즉시 종료된다. 개별적 조치들은 영토적으로 권한이 있는 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IV. 본조의 적용에 따른 조치들은 행정법원법전 제L.521-1조 및 제L.521-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출, 심리 및 판단되는 행정법원에서의 소송의 대상이 된다.
- V. 하원 및 상원은 본 조에 따라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지체없이 통보받는다. 하원 및 상원은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한 통제 및 평가의 범주에서 일체의 보충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VI. 공중보건법전 제L.3131-19조의 마지막 문의 규정과 달리, 제L.3131-19조에서 규정된 과학위원회는 본 조 I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소집되며, 본 조 I의 적용에 따른 조치 및 공중보건법전 제L.3131-1조의 적용에 따라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이 취한 조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제출한다. 이와 같은 의견은 채택되자마자 과학위원회의 위원장에 의해 수상, 하원의장 및 상원의 장에게 통지된다. 이와 같은 의견은 지체없이 공개된다.
- VII. 공중보건법전 제L.3136-1조 제3항에서 마지막 항은 본 조 I 과 II의 적용에 따라 내려진 조치들에 적용된다.
- VIII. 본 조 I 내지 VII은 프랑스 공화국의 모든 영토에 적용된다.
- IX. 본 조에 의해 국가의 대표자에게 부여된 권한은 파리, 드골공항, 르부르제 공항, 오를리 공항의 영역에서는 경찰청장에 의해 행사된다.

● 제2조는 2021년 6월 2일부터 보건상황의 국지적 악화를 대처하고, 감염병 유행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긴급상태가 일정한 지역에서 선언될 경우를 위한 특별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이 특별규정은 해당 지역이 전체 인구의 10% 미만을 대표하며, 보건긴급상태의 연장기간과 관련하여 공중보건법전 제L.3131-13조 제3항 - “1개월 이상의 보건긴급상태의 연장은 제L.3131-19조에 규정된 과학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법률을 통해서만 승인될 수 있다.” - 에서 규정된 1개월의 기간은 2개월로 규정되도록 하였음.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 제2조

I. 본 법률 제1조는 보건긴급상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I. 공중보건법전 제L.3131-13조가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보건상태의 국지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긴급상태가 2021년 6월 2일 및 2021년 8월 31일에 하나 또는 여러 곳의 정해진 지역에서 선언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지역이 국가인구의 10% 미만인 한에 있어서 공중보건법전 제L.3131-1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은 2개월로 변경된다.

● 제3조는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된 보건긴급상태의 탈출에 관한 관리규정을 프랑스 헌법 제74조¹¹⁾에

11) 프랑스 헌법 제74조 “① 본조에서 규정하는 해외 지방자치단체들은 공화국내에서 각각의 고유한 이익을 고려한 지위를 가진다.
 ② 본조에서 규정하는 해외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위는 지방의회의 의견개진 후 채택된 조직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즉, 조직법률은 - 법률·행정입법의 적용 조건;
 - 본조에서 규정하는 해외 지방자치단체들의 권한; 이미 해외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권한 외에, 국가는 필요한 경우 조직법률로 구체화되고 보완되는 제73조 제4항에 열거된 권한을 이양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직, 제도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의회 선거제도;
 -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을 포함한 정부제출법률안, 의원발의법률안, 법률명령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과 관련 있는 국제협약의 비준·승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조건을 정한다.
 ③ 조직법률은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 다음 사항의 조건도 규정할 수 있다.
 - 국사원은 지방의회가 법률의 영역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 개입하는 일정한 부류의 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사법적 통제권을 행사한다.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뉴칼레도니아에서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정부가 법률명령(ordonnance)을 통해 실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음.

- 여기서 법률명령(ordonnance)은 프랑스 헌법 제34조¹²⁾의 규정에 따라 의회가 법률을 통해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을 행정부가 채택하는 행위를 말하며, 따라서 법률명령은 내용적으로는 법률사항이지만,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행정부의 행위임. 현행 프랑스 헌법은 헌법 제38조의 고전적(classiques) 법률명령¹³⁾, 헌법 제47조의 재정적(financières) 법률명령¹⁴⁾, 헌법 제74-1조의 해외령(outre-mer)의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제소를 받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영역을 개입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발효 이후 공포된 법률을 변경할 수 있다.
- 지역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된 조치들은 취업, 직업적 활동의 실시를 위한 거주권 및 토지재산의 보호의 영역에서 그 주민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감독 하에 공적 자유의 행사를 위해 국토 전체에 부여된 보장을 준수하면서 자신이 가지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본조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다른 구성방식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한 후에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변경된다.”

12) 프랑스 헌법 제34조 “① 법률은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시민적 권리 및 공적 자유의 행사를 위해 시민에게 부여된 기본적 보장; 자유, 다원주의 미디어의 독립; 국방을 위해 시민에게 과하여진 신체 및 재산상 의무;
- 국적, 개인의 신분 및 법적 능력, 부부재산제, 상속 및 증여;
- 중죄 및 경죄 및 위법행위의 결정과 그에 대한 형벌; 형사소송절차; 사면; 새로운 심급의 법원 설치와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규정;
- 모든 주세의 과세기준, 세율, 징수방식; 화폐발행제도.

② 법률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 의회, 지방의회, 재외프랑스인의 대표부,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 구성원의 선거위임과 선거기능의 행사조건;
- 공공기관의 설립;
- 국가의 일반공무원 및 군공무원의 신분보장;
- 기업의 국유화 및 공기업의 민영화;

③ 법률은 다음사항의 기본원칙을 정한다.

- 국방조직;
- 지방자치단체의 자유행정, 권한, 재원;
- 교육;
- 환경보존;
- 재산권, 물권, 민간채권, 상업채권;
- 노동권, 노동조합권, 사회보장권.

④ 재정법률은 조직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그 유보조항에 따라 국가의 재원 및 부담을 정한다.

⑤ 사회보장 자금조달법률은 조직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그 유보조항에 따라 균형재정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정하고, 예상수입을 감안하여 지출의 용도를 정한다.

⑥ 프로그램적 법률은 국가활동의 목적을 정한다.

⑦ 공공재정의 다년간의 방향설정은 프로그램적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공공재정의 다년간의 방향설정은 공공행정의 회계균형이라는 목적에 포함된다.

⑧ 본조항은 조직법률로 구체화되고 보완될 수 있다.”

13) 프랑스 헌법 제38조 “① 정부는 국정수행을 위하여 법률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조치를 일정한 기간 동안 법률명령으로써 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줄 것을 의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률명령은 국사원의 의견청취 후 국무회의에서 발한다. 법률명령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 그러나 권한부여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승인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폐기된다.

③ 본조 제1항의 기한이 만료되면 법률명령의 법률 소관사항은 법률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법률명령은 명시적인 방법에만 비준될 수 있다.”

14) 프랑스 헌법 제47조 “① 의회는 조직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법률안을 의결한다.

② 하원에 정부제출법률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1차 독회를 통해 의결하지 아니하면 정부는 이를 상원에 회부하고, 상원은 이를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그 다음은 제45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다.

법률명령¹⁵⁾과 같이 3가지 종류의 법률명령(ordonnance)을 규정하고 있음.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 제3조

헌법 제38조¹⁶⁾가 규정한 조건에 따라, 정부는 본 법률이 공포된 후 1개월 이내에 법률명령을 통해서 헌법 제74조가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뉴칼레도니아에서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한 보건위기의 탈출을 위한 조치에 적합하도록 하는 적용조치를 취할 권한이 부여된다. 법률명령이 공포된 후 3개월 내에 승인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된다.

- 제4조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역 및 격리체제의 강화를 규정함. 즉 당사자가 채택한 숙박장소가 보건긴급상태와 관련된 조치의 실효성을 보장하거나, 국가의 대표자(représentant de l'Etat)의 통제 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대표자에게 당사자가 선택한 숙박장소를 반대할 권한을 부여함.
또한 제4조는 보건에 관한 질서규정 위반의 확인과 관련하여 단속권이 있는 공무원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었음. 즉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세관 공무원을 포함시켰으며, 대중을 수용하는 시설에 대해 규정된 사항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쟁, 소비 및 부정행위 단속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강화하였음.¹⁷⁾
- 제5조는 보건상황의 추이를 효과적으로 추적 및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정보의

③ 의회가 7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제출법률안은 법률명령으로써 발효될 수 있다. …”

15) 프랑스 헌법 제74-1조 “① 제74조에서 정한 해외지방자치단체와 뉴칼레도니아에서 정부는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분야에서 법률명령을 통해 프랑스 본토에서 발효 중인 법률적 성격의 조항을 필요한 수정을 하여 확대하거나, 현재 유효한 법률적 성격의 조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조직에 적합하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명시적으로 문제의 법률규정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절차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6) 프랑스 헌법 제38조 “① 정부는 국정수행을 위하여 법률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조치를 일정한 기간 동안 법률명령으로써 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줄 것을 의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률명령은 국사원의 의견청취 후 국무회의에서 발한다. 법률명령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 그러나 수권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승인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폐기된다.

③ 본조 제1항의 기한이 만료되면 법률명령의 법률 소관사항은 법률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법률명령은 명시적인 방법에만 비준될 수 있다.”

17) ※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 제4조

: “공중보건법전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제L.3131-15조 II 제3항에서 :

a) “적합한 숙박장소”라는 말은 “다른 적합한 숙박장소”라는 말로 변경된다;

b) 아래의 한 문장이 추가된다:

“국가의 대표자는 당사자가 채택한 장소가 검역 또는 격리에 의한 감금조치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거나 감금의 적용을 위한 통제를 하기 위한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가 채택한 장소의 선택을 반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대표자는 해당 조치의 진행장소를 결정한다.”

2. 제L.3136-1조에서 :

a) 제5항에서 “형사소송법전의”라는 말 다음에 “그리고 세관원”이라는 말이 추가된다;

b) 제8항에서 “8.의 적용으로 취해진”이라는 말 대신에 “5., 8.의 적용으로 취해진”이 대체된다.

3. 제L.3821-11조, 제L.3841-2조 및 제L.3841-3조 제1항에 “보건위기상태를 연장하고, 보건위기상태에 관한 규정을 보충하는 2020년 5월 11일의 n. 2020-546”이라는 표현은 “보건위기탈출을 위한 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체된다.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들 정보는 익명화된 형식으로 국가건강정보시스템에 공중보건법전이 정하는 조건 및 보장에 따라 수집된다는 점을 규정하였음.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 제5조

보건긴급상태를 연장하고, 보건긴급상태의 규정을 보충하는 2020년 5월 11일 법률(n. 2020-546)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 제11조는 다음의 항에 의해 보충된다.

“X. 본 조의 적용에 따라 실시된 정보처리 중에 수집되고, 공중보건법전 제L.1461-1조 1에 규정된 국가건강정보시스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는 국가건강정보시스템에 수집되며, 공중보건법전 제1편 제IV권 제VI편 제1장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2조 IV는 폐지된다.

- 제6조는 2021년 10월 31일까지 여러 가지 필수적인 조치의 적용을 연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즉 i) 형사분야 이외의 분야의 재판관할 및 공동소유관리자의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2020년 3월 25일의 법률명령(Ordonnance n° 2020-304 du 25 mars 2020 portant adaptation des règles applicables aux juridictions de l'ordre judiciaire statuant en matière non pénale et aux contrats de syndic de copropriété)에 따른 조치들, ii) 법원에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2020년 11월 18일의 법률명령(Ordonnance n° 2020-1400 du 18 novembre 2020 portant adaptation des règles applicables aux juridictions de l'ordre judiciaire statuant en matière non pénale et aux copropriétés; Ordonnance n° 2020-1401 du 18 novembre 2020 portant adaptation des règles applicables aux juridictions de l'ordre judiciaire statuant en matière pénale; Ordonnance n° 2020-1402 du 18 novembre 2020 portant adaptation des règles applicables aux juridictions de l'ordre administratif)에 따른 조치들(예를 들면, 원거리 및 전자통신을 통한 변론개최, 사정이 좋지 않은 법원의 관할을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 iii) 2020년 12월 2일의 법률명령(Ordonnance n° 2020-1507 du 2 décembre 2020 adaptant le droit applicable au fonctionnemen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et des instances collégiales administratives pendant l'état d'urgence sanitaire) 제1조에 규정된 공적 시설의 의결기구의 의결을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원거리 의결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iv) 2020년 11월 14일의 법률(LOI n° 2020-1379 du 14 novembre 2020 autorisant la prorogation de l'état d'urgence sanitaire et portant diverses mesures de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심의기관의 소집에 관한 조치들, v) 2020년 6월 17일 법률(LOI n° 2020-734 du 17 juin 2020 relative à diverses dispositions liées à la crise sanitaire, à d'autres mesures urgentes ainsi qu'au retrait du Royaume-Uni de l'Union européenne) 제52조에 규정한 비영리목적의 노동력 대여에 관한 규정(이 규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활동이 저조한 기업은 자신의 직원을 일손이 부족한 다른 회사에서 일하게 할 수 있음), vi) 기업의 종업원 대표기구의 회의를 화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vii) 2020년 12월 9일 법률명령(Ordonnance n° 2020-1553 du 9 décembre 2020

prolongeant, rétablissant ou adaptant diverses dispositions sociales pour faire face à l'épidémie de covid-19)에 규정된 사회의료서비스 기관의 운영에 관한 여러 예외적 조치 등을 연장하였음.

- 제7조는 보건위기의 영향을 축소하고, 활동의 점진적 재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법률명령(Ordonnance)을 통해서 실업수당 등의 영역에서 이전에 취해진 조치를 적절하게 하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는 2021년 6월로 예정된 코르시카(Corse), 프랑스령 기아나(Guyane), 마르티니크(Martinique)의 도, 레지옹, 지방의회의 선거의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Chapter

3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 제1조에서 제4조에 대한 입법영향평가

- | | |
|----|-------------------------|
| 19 | 1. 현재의 법적 상황 |
| 27 | 2.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 |
| 28 | 3. 고려될 수 있는 선택 및 채택한 선택 |
| 31 | 4. 채택한 법규정에 대한 영향분석 |
| 32 | 5. 자문활동 및 적용방법 |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 제1조에서 제4조에 대한 입법영향평가

1. 현재의 법적 상황

-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 제1조에서 제4조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서에서는 진단과 관련하여 현재의 법적 상황을 서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긴급상태에 관한 전체 법률체계의 변화, 보건긴급상태와 관련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률 및 행정명령의 내용, 관련된 소송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음.

(1) 보건긴급상태에 관한 전체 법률체계의 변화

- 프랑스의 보건긴급상태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2020년 3월 23일 법률(n. 2020-290) 제2조에 의해 창설되었음. 보건긴급상태는 그 성격과 중대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보건과 관련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정부에 특별한 행동수단을 부여한다는 점이 특징적임.
- 상당히 제한적인 시간적 제약 속에서 제정된 2020년 3월 23일 법률은 긴급하게 보건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채택해야 절박한 필요성과 향후 실행된 조치를 재검토하고자 하는 희망이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회는 보건긴급상태가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자 하였음. 이에 따라 공중보건법전 제3편 제 I 권 제III편 제 I -2장의 규정(즉 보건긴급상태(Etat d'urgence sanitaire)에 관한 장)은 처음에는 2021년 4월 1일까지 적용되도록 하였음.
-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보건위기의 긴급성 및 중대성을 감안하여, 2020년 3월 23일 법률 제4조는 곧바로 2020년 3월 23일 법률이 발효되자마자 2개월의 기간 동안 국가전체에 보건긴급상태를 선언하도록 하였음.
- 또한 보건위기의 변화를 고려하고, 2020년 4월 28일 과학위원회의 권고를 따라, 프랑스 의회는 2020년 5월 11일 법률(LOI n° 2020-546 du 11 mai 2020 prorogeant l'état d'urgence sanitaire et complétant

ses dispositions)을 통해서 보건긴급상태를 2020년 7월 10일까지 연장하였음. 뿐만 아니라, 2020년 5월 11일 법률은 보건긴급상태 체제에 대한 일부수정 - 특히 검역과 격리부분 - 을 하였으며, 가능한 빨리 코로나19 감염의 연쇄반응을 확인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실시를 허용하였음.

- 프랑스 전체의 보건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2020년 7월 11일에 보건위기상황이 중단되었음. 그렇지만, 프랑스의 입법자는 보건긴급상태 동안 정부가 취한 조치를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경우에 코로나19 감염병이 재발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20년 7월 9일의 법률(LOI n° 2020-856 du 9 juillet 2020 organisant la sortie de l'état d'urgence sanitaire)을 통해 임시체제를 창설하였으며, 2020년 7월 9일의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20년 7월 9일의 결정(Décision n° 2020-803 DC du 9 juillet 2020)을 통해서 합헌선언을 한 바 있음.
- 2020년 10월 30일까지 적용된 이 임시체제는 보건긴급상태 체제가 규정한 것과 동일하게 의회의 정보보장 및 의회가 가지는 수단을 규정하면서, 행정명령권(pouvoir réglementaire)에게 보건긴급상태에 비해 제한적 효력을 가지는 일정한 특별권한을 부여한 바 있음.
- 한편, 2020년의 신학년이 시작될 무렵의 코로나19 감염병의 광범위한 재확산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2020년 10월 14일의 데크레(Décret n° 2020-1257 du 14 octobre 2020 déclarant l'état d'urgence sanitaire)를 통해 새롭게 프랑스 전체에 2020년 10월 17일부터 보건긴급상태를 선언하였음.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된 보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프랑스의 입법자는 2020년 10월 19일 과학위원회의 찬성의견을 따라 보건긴급상태를 2021년 2월 16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11월 14일 법률(LOI n° 2020-1379 du 14 novembre 2020 autorisant la prorogation de l'état d'urgence sanitaire et portant diverses mesures de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을 가결하였음.
- 2020년 11월 14일 법률은 항공운송에서 실시되고 있는 검진의무의 범주에 따른 형식의 검사를 도입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다른 공공교통의 수단으로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긴급상태의 탈출 체제에 일정한 수정을 가했음.
- 2021년 2월 15일 법률(LOI n° 2021-160 du 15 février 2021 prorogeant l'état d'urgence sanitaire)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여전히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점과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프랑스의 보건긴급상태를 2021년 6월 1일까지 연장하였음.¹⁸⁾

(2) 법률을 통한 보건긴급상태의 적용

2020년 10월 17일 이후부터 법률을 통해 프랑스 전체에 적용된 보건긴급상태의 구체적 모습은 다음과 같음.

18) ETUDE D'IMPACT du PROJET DE LOI relatif à la gestion de la sortie de crise sanitaire, 2021, 11-12면.

1) 보건긴급상태와 관련된 조치들

① 수상의 권한에 속하는 조치들

- 공중보건법전 제L.3131-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상은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의 보고에 따라 데크레를 통해서 공중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즉 수상은 1. 사람 및 차량의 왕래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며,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 및 그 사용조건을 규제하거나, 2. 가족적 또는 건강의 필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동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이 자신의 주거를 이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 감염될 수 있는 사람의 검역을 위한 조치를 명하거나, 4. 감염된 사람을 자신의 주거 또는 다른 적합한 숙소에 수용하거나 격리를 유지하는 조치를 명하거나, 5. 최우선적인 필요가 있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사람의 접근을 보장하면서, 하나 또는 여러 부류의 대중을 수용하는 시설 및 집회장소의 임시적 폐쇄를 명하거나 개방 - 이들 장소에 대한 접근조건 및 있는 조건을 포함함 - 을 규제하거나, 6. 공공도로의 모임 및 일체의 집회를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7. 보건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람 및 재화, 서비스의 징발을 명하거나, 8. 일부 생산물 시장에서 확인된 긴장을 방지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물품의 가격에 대한 일시적 통제조치를 취하거나, 9. 필요시에 보건위기의 완전해소를 위해 적합한 약품을 환자가 가질 수 있도록 일체의 조치를 취하거나, 10. 필요시 오로지 보건위기를 막기 위해서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체의 다른 조치를 데크레를 통해서 취할 수 있음.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상이 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조치들은 보건위기에 엄격하게 비례적이어야 하며, 시간적 및 장소적 상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시 종료됨.¹⁹⁾

②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조치들

- 공중보건법전 제L.3131-16조에 근거하여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은 공중보건법전 제L.3131-15조에 규정된 조치를 제외하고, 보건위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이유가 있는 명령(arrêté)을 통해서 보건조치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일체의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 그리고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은 제L.3131-15조 1. 내지 9.의 적용에 따라 수상이 명하는 조치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개별적 조치도 취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공중보건법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은 보건위기의 대처를 위한 보건시스템에 관하여 상당히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자격에서 공중보건법전 및 다른 법전에 규정된 여러 법률 및 명령 규정의 예외를 설정할 수도 있음(예를 들면, 약품 발급규칙,

19) 위의 책, 12-13면.

보건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물자 및 장비를 무상으로 양도 및 처분하기 위한 재산규정 등).

- 이와 같은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의 조치들 또한 보건위기에 엄격하게 비례적이어야 하며, 시간적 및 장소적 상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시 종료됨.²⁰⁾

③ 해당 지역의 국가의 대표자의 권한

- 공중보건법전 제L.3131-17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 또는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이 제L.3131-15조 및 제L.3131-16조가 규정하는 조치를 취할 때, 수상 또는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은 지역적으로 권한이 있는 국가의 대표자에게 이들 규정의 적용을 위한 일반적 또는 개별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제L.3131-15조 1. 내지 9. 및 제L.3131-16조가 규정하는 조치들이 지리적으로 하나의 도(département)의 영역 내에서 적용되어야 할 때, 수상 및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은 해당 도의 국가의 대표자에게 스스로 이들 조치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국가의 대표자의 결정은 레지옹 보건부처의 장(directeur général de l'agence régionale de santé)의 의견을 들은 후에 내려짐.
- 도(département)의 국가의 대표자가 결정한 조치들 또한 수상 및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건위기에 엄격하게 필요하고, 비례적이어야 하며, 시간적 및 장소적 상황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히 개별적 조치들은 해당지역의 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되어야 함.²¹⁾

2) 보건긴급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임시체제

① 수상의 권한에 속하는 조치들

- 보건긴급상태가 선언된 지역 이외에 적용되는 보건긴급상태에서 벗어나는 체제는 2020년 7월 9일 법률(n. 2020-856) 제1조에 근거하여, 수상은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의 보고에 따라 데크레를 통해서 공중보건의 이익의 관점에서 그리고 오로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
- 즉 수상은 1. 사람 및 차량의 통행과 집단적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 및 집단적 교통수단의 사용조건을 규제하고, 항공운송 및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가족적 및 직업적 필요 및 건강에 엄격하게 반드시 필요한 이동을 제외하고, 사람의 이동 및 교통수단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며, 2. 최우선적인 필요가 있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사람의 접근을 보장하면서, 하나 또는 여러 부류의 대중을 수용하는 시설 및 집회장소의 대중에 대한 개방 - 이들 장소에 대한 접근조건 및 있는 조건을 포함함 -

20) 위의 책, 13-14면.

21) 위의 책, 14면.

을 규제하며, 3. 국내안전법전(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제L.211-2조 및 제L.21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 도로상 및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의 사람의 집합, 집회 및 활동을 규제하며, 4. 프랑스 본토 또는 헌법 제72-3조²²⁾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를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대중교통을 통해 왕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바이러스 검사시험의 결과 제출을 명할 수 있음(이와 같은 조치는 또한 보건긴급상태의 범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전파되는 지역의 경우에 대해서 2020년 7월 9일 법률 제1조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지역의 보건상황을 이유로 하나 또는 여러 부류의 대중을 수용하는 시설의 임시적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하였음.
- 2020년 7월 9일 법률(n. 2020-856) 제1조 4. 에 규정된 바이러스 검사시험의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전파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헌법 제72-3조에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출발지로 하는 이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무엇보다도 2020년 7월 9일 법률(n. 2020-856) 제1조에 근거하여 수상이 취하는 이와 같은 조치들은 보건위기에 엄격하게 비례적이어야 하며, 시간적 및 장소적 상황에 적합하여야 하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시 종료됨.²³⁾

②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조치들

- 보건긴급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조직하는 2020년 7월 9일의 법률(n. 2020-856)은 이 시기 동안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 따라서 보건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건시스템에 관한 조치는 공중보건법전 제L.3131-1조에 근거하여 내려질 수 있음.
- 따라서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은 감염병에 의한 위협과 같이 긴급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보건위협이 있는 경우에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의 결과를 방지 및 제한하기 위해서 이유가 있는 명령(arrêté)을 통해서 공중보건을 위해서 위협에 비례하고, 시간 및 장소적 상황에 적합한 일체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은 보건위기상황의 지속적 소멸을 위해서 보건위기상황이 끝난 후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또한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은 공중보건법전 제L.3131-15조 및 제L.3131-17조의 II에 규정된 조건에

22) 프랑스 헌법 제72-3조 “① 공화국은 자유·평등·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여 해외영토 주민을 프랑스 국민으로 인정한다.

② 과테루프, 기안, 마르티니크, 레유니옹, 마이요트, 생바르레미, 생 마르탱, 생피에르-에-미끄롱, 왈리스 후투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도, 해외레지옹 및 제73조 마지막 항의 적용에 따라 창설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제73조를 통해 적용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74조의 적용을 받는다.

③ 뉴벨칼레도니아의 지위는 제13장에서 규정한다.

④ 프랑스 남방남극령 및 클리페르통의 법제와 특수한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23) ETUDE D'IMPACT du PROJET DE LOI relatif à la gestion de la sortie de crise sanitaire, 2021, 14-15면.

따라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수 있는 사람의 검역, 수용, 격리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개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²⁴⁾

③ 해당 지역의 국가의 대표자의 권한

- 2020년 7월 9일 법률 제1조는 수상이 일반적 효력이 있는 조치를 데크레를 통해 규정할 때, 해당지역의 국가의 대표자에게 이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위한 일반적 또는 개별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9일 법률 제1조 1 이 규정한 조치들이 지리적으로 하나의 도(département)의 영역 내에서 적용되어야 할 때, 수상은 해당 도의 국가의 대표자에게 스스로 이들 조치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국가의 대표자의 결정은 레지옹 보건부처의 장(directeur général de l'agence régionale de santé)의 의견을 들은 후에 내려짐.
- 뿐만 아니라, 수상은 또한 해당 도의 국가 대표자에게 명령(arrêté)을 통해서 2020년 7월 9일 법률 제1조 1 의 2.의 적용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하나 또는 여러 부류의 대중을 수용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그리고 보건시스템에 속하는 조치들과 관련하여, 공중보건법전 제L.3131-1조는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이 도(département)의 국가의 대표자에게 장관의 명령이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일체의 적용조치 - 여기에서는 개별적 조치도 포함됨 - 를 취할 권한을 부여함.²⁵⁾

(3) 행정명령을 통한 보건긴급상태의 적용

① 수상의 데크레를 통한 조치

- 2020년 10월 30일 이후부터 공중보건법전 제L.3131-15조에 근거하여 프랑스 본토와 해외령의 코로나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여 두 개의 데크레가 적용되었음. 2020년 10월 29일 데크레(Décret n° 2020-1310 du 29 octobre 2020 prescrivant les mesures générales nécessaires pour faire face à l'épidémie de covid-19 dans le cadre de l'état d'urgence sanitaire)는 프랑스 본토 전체에 적용되었으며, 2020년 12월 8일 이후 마르티니크(Martinique)를 포함하여, 모든 해외령은 2020년 10월 16일의 데크레(Décret n° 2020-1262 du 16 octobre 2020 prescrivant les mesures générales nécessaires pour faire face à l'épidémie de covid-19 dans le cadre de l'état d'urgence sanitaire)가 적용되었음.²⁶⁾

24) 위의 책, 15-16면.

25) 위의 책, 16면.

26) 위의 책, 16-17면.

②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의 명령에 따른 조치

- 공중보건법전 제L.3131-1조 및 제L.3131-16조에 근거하여 보건위기상태의 범주에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시스템의 조직 및 기능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는 2020년 7월 10일의 명령(Arrêté du 10 juillet 2020 prescrivant les mesures générales nécessaires pour faire face à l'épidémie de covid-19 dans les territoires sortis de l'état d'urgence sanitaire et dans ceux où il a été prorogé)은 진행되고 있는 감염병의 종식을 목적으로 보건조치를 적합하게 하는 구체적인 조치 전체를 규정하고 있음.²⁷⁾

③ 2020년 10월 29일 데크레(n. 2020-1310)의 적용에 따른 국가의 대표자의 조치

- 2020년 10월 29일 데크레(n. 2020-1310)의 적용에 따라 국가의 대표자인 도지사(préfet)는 2021년 4월 19일까지 4,625개의 조치를 취했음.²⁸⁾

※ 2021년 4월 19일까지 도지사가 취한 조치들

조치의 분류	결정의 수	퍼센트
통행제한	59	1.28 %
마스크 착용 의무	1,200	25.95 %
집회 규제	258	5.58 %
활동 규제	2,536	54.83 %
상업활동 특례	382	8.26 %
검역	40	0.86 %
항공교통 규제	27	0.58 %
해상 및 하천 교통 규제	20	0.43 %
문화시설 특례	2	0.04 %
상업지구 규제	92	1.99 %
해변에 대한 접근	9	0.19 %
총계	4,625	100.00 %

(4) 보건긴급상태와 관련된 소송

- 2020년 10월 29일의 데크레에 대해서 프랑스의 최고행정법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사원(Conseil d'État)에 183개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일부는 현재에도 진행 중임. 이들 소송은 주로 2020년 10월

27) 위의 책, 24면.

28) 위의 책, 28면.

30일에서 2020년 12월 15일 사이의 격리(confinement)의 실시, 대중을 출입하는 식당 및 상점에 대한 활동금지, 종교활동에 대한 제한, 또는 학교 및 정규교육 이외의 활동의 범주에서 6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마스크 착용의무에 관한 것임.

- 2020년 10월 16일의 데크레(Décret n° 2020-1262 du 16 octobre 2020 prescrivant les mesures générales nécessaires pour faire face à l'épidémie de covid-19 dans le cadre de l'état d'urgence sanitaire)에 대해서는 국사원에 55개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주로 일정한 지역에서 야간통행금지를 명한 도지사에게 부여된 권한에 관한 것임.
- 2020년 10월 16일의 데크레와 2020년 10월 29일의 데크레 이외의 법규범에 관한 28개의 소송이 국사원에 제기되었음. 특히 보건긴급상태를 선언하는 2020년 10월 14일의 데크레(Décret n° 2020-1257 du 14 octobre 2020 déclarant l'état d'urgence sanitaire), 국경의 영역에서 내려진 회람(circulaire), 건강정보 및 도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한 긴급심리(référé-liberté)²⁹⁾ 명령에 대한 것임.
- 그러나 이와 같은 청구의 대부분은 기각되었음. 격리 또는 야간통행금지 범주에서의 이동 제한은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적이라고 판단되었고, 일정한 시설의 임시적 폐쇄에 관한 결정도 문제되지 않았고, 일부 상가에 대한 임시적 폐쇄조치에 대해서도 배달판매의 승인 또는 주문취소를 통해 완화된다는 점을 이유로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 그리고 행정법원의 판례는 채택된 조치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경우가 많았음.
- 즉 공공도로에서의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시위의 개최를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국내안전법전에 규정된 신고절차와 중복되는 한에 있어서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 7월 10일의 데크레는 집회에 대한 신고절차는 여전히 적용되며, 경찰서에 제출된 신고서는 보건관련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규정하였음.
-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격리시기 이외에 장례식을 제외한 미사를 보는 장소에서의 일체의 집회금지는 특히 공적 장소에서의 10명 미만의 집회에 대한 관용을 고려할 때 덜 엄격한 조치가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판단되었음.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2020년 5월 11일의 데크레는 종교시설이 대중을 받아들이는 조건을 규정한 2020년 5월 22일 데크레를 통해 개정되었음.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사원은 그 크기와 무관하게 모든 종교시설에 강제된 30인이라는 상한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와 같은 국사원의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2일의 데크레는 개정되었음.
- 마지막으로, 국사원은 마스크 착용의무와 관련하여 해당 코원의 특성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를

29) 기본권 보장형 긴급심리로 번역되는 référé-liberté는 행정청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방법으로 침해할 수 있는 청구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본권 보장 긴급심리는 긴급성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고, 보호받을 기본권을 제시해야 하며, 보호되는 자유의 침해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것을 제시해야 하며, 긴급심리 판사는 48시간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 법령용어집, 2008, 633면.

정당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무는 감염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을 이유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비유럽 외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가족 재결합을 위한 비자의 발급을 중단한 결정은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및 아동의 월등한 이익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하였음.³⁰⁾

2.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

(1) 입법의 필요성

-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영향평가서는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최근의 코로나19 전파 상황, 보건상황, 현재 발효되고 있는 법체계의 시기적 한계 등을 언급하였음.
- 입법영향평가서는 2021년 이번 봄의 초기에 코로나19 감염병의 전파는 강하게 유지되었으며, 병원시설에 부담을 주었지만(2021년 4월 25일 30,347명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하였으며, 이 가운데 5,994명의 중증환자는 위급한 치료가 필요했음),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였음(4월 16일에서 22일의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발생률은 전국적으로 인구 100,000명당 313.8명임).
- 그리고 입법영향평가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전파되고 있지만, 격리 및 백신정책의 분야에서 지역적 또는 국가적 조치의 채택에 따라 보건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2021년 4월 25일 14,096,492명의 사람이 1차 백신접종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지난 3월 31일의 연설 기조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억제조치의 완화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 그리고 입법영향평가서는 이와 같은 상황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를 공고히 하고, 코로나19 감염병의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주의는 여전히 필요하며, 여름 휴가기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동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될 특별한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병원의 수용능력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였음.
- 무엇보다도 입법영향평가서는 2021년 2월 15일 법률(LOI n° 2021-160 du 15 février 2021 prorogeant l'état d'urgence sanitaire) 제2조가 2021년 6월 1일까지 보건긴급상태의 연장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난 후에는 공중보건법전 제L.3131-15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부여된 권한이 즉시 중단되며, 보건위기상태의 범주에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 조치를 규정하는 2020년 10월 16일의 데크레(n. 2020-1262) 및 2020년 10월 29일의 데크레(n. 2020-1310)가 규정한 조치 전체 또한 중단되며, 2020년 7월 9일의 법률(LOI n° 2020-856 du 9 juillet 2020 organisant la sortie

30) ETUDE D'IMPACT du PROJET DE LOI relatif à la gestion de la sortie de crise sanitaire, 2021, 29-32면.

de l'état d'urgence sanitaire) 제1조가 창설한 임시체제 또한 4월 1일에 종료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이에 따라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영향평가서는 보건긴급상태가 종료된 이후에 현재 발효 중인 일정한 조치를 유지하고, 보건상황의 변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합한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³¹⁾

(2) 입법목적

-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영향평가서는 새로운 법률의 전체적인 입법목적과 관련하여 일반법 체제의 점진적 회복과 국민의 보호라는 요청을 조화시킴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프랑스 대통령의 3월 31일 연설의 방향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였음.
- 새로운 입법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사람의 이동제한과 관련된 강화된 조치와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상황이 일시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질서유지조치의 점진적 완화가 2021년 5월에는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건비상사태의 실시는 더 이상 요구될 수 없음.
- 그렇지만, 하계기간 동안 의회가 업무를 중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에게 임시적인 조치를 유지하거나, 이후에 갑작스럽게 보건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2021년 6월부터 점진적인 개방을 가능하게 하고, 필요시 적합하고, 비례적인 조치를 적용하는 과도적 조치를 통해서 보건질서유지조치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보건상황의 심각하고 지역적인 악화에 따라 정부가 요구되는 조치를 적합한 기간 동안 취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여름 휴가기간 동안 보건긴급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전염성 및 심각함을 나타낼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의 변종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입법은 적절한 감금 및 격리, 검역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 또한 규정할 필요가 있음.³²⁾

3. 고려될 수 있는 선택 및 채택한 선택

(1) 고려될 수 있는 선택

-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영향평가서는 새로운

31) 위의 책, 33-34면.

32) 위의 책, 34-35면.

입법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선택으로 일반법 규정을 사용하는 방법과 새로운 보건비상사태의 연장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입법영향평가서는 우선 고려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으로 일반법 규정 및 공중보건법전 제L.3131-1조에 근거하여 현재의 보건긴급상태가 2021년 6월 1일에 종료되도록 하고, 교통의 이동이나 접근, 집회, 대중을 수용하는 시설의 개방의 부분에서는 공권력의 최소한의 개입을 규정할 것을 상정하였음.
- 그리고 입법영향평가서는 고려될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으로 프랑스 전역에 새로운 보건비상사태의 연장을 도입하는 것을 상정하였음. 이 두 번째 선택은 더이상 보건상황이 보건위기의 성격을 나타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예외적인 특권을 계속 유지하게 함.³³⁾

(2) 채택한 선택

- 그러나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영향평가서는 위의 두 가지 선택을 배제하고, 현재의 보건긴급상태를 연장하지 않는 다른 선택을 하였음.
- 즉 이 선택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전파상황을 안정시키며, 프랑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도적으로 제한적인 기간 동안 일정한 특별한 수단을 정부가 가지면서, 백신접종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임. 이 선택에 따른 정부의 권한은 여러 활동의 점진적 회복을 추구하는 것과 코로나19 감염병의 갑작스러운 재확산에 대한 관리에 불가결한 조치에 부합되어야 함.
- 입법영향평가서가 채택한 선택은 현재의 보건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법 규정으로의 회복의 필요성과 이와 같은 회복을 실천함에 반드시 필요한 주의를 고려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구체적으로 입법영향평가서가 채택한 선택은 2020년 7월 9일의 법률(LOI n° 2020-856 du 9 juillet 2020 organisant la sortie de l'état d'urgence sanitaire)이 수립한 체제를 따르며, 2021년 6월 2일에서 2021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됨. 그리고 이와 같은 선택에 따라서 수상은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의 보고에 근거한 데크레를 통해 공중보건을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만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즉 수상은 1. 사람 및 차량의 왕래, 공동교통수단에 대한 접근 및 그 사용조건을 규제하거나, 바이러스의 활발한 전파가 확인된 일부분의 지역의 경우에는 금지할 수 있으며, 항공 및 선박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왕래가 가족적, 직업적 및 건강의 필요에 엄격하게도 필수적일 것을 조건으로, 사람의 이동 및 교통수단의 왕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주에서 수상은 프랑스 지방, 코르시카 또는 헌법 제72-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를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왕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바이러스 검사시험의 결과,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회복되었다는 증명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2. 주거용 건물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33) 위의 책, 35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면서, 대중을 수용하는 하나 또는 여러 부류의 시설 및 집회장소의 대중에 대한 개방 - 접근 및 해당 장소에 있는 조건이 포함됨 - 을 규제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주에서 대중을 수용하는 하나 또는 여러 부류의 시설 및 집회장소가 그 성격에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의 실시를 보장할 수 없는 활동을 수용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적극적 전파가 확인된 일정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시설 및 장소에 대한 임시적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3. 국내안전법전 제L.211-2조 및 제L.21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의 사람의 집합, 집회 및 활동을 규제할 수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바이러스 진단 검사의 결과를 요청하는 권한이 확대되게 됨. 즉 대중교통 이외에 자가용의 경우를 포함하여 프랑스 본토, 코르시카 및 해외령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모든 유형의 이동에게 요구됨. 게다가 현재 유럽연합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력과 조화되게, 코로나19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바이러스 진단 검사의 결과 외에도 백신증명서 또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회복되었다는 증명서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됨. 이 외에는 2020년 7월 9일 법률 제1조의 다른 규정이 그대로 반영되었음.
- 게다가 입법영향평가서가 채택한 선택은 보건긴급상태와 관련하여 규정된 보건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부가되는 제재에 관한 공중보건법전 제L.3136-1조를 개정하였음. 이는 세관원에도 위반을 확인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대중을 받아들이는 시설에서 제재와 관련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청 직원(agents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에게 부여된 권한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음.
- 뿐만 아니라, 입법영향평가서가 채택한 선택은 국토의 제한적인 하나 또는 여러 부분 - 해당 국토가 국민의 10% 미만을 대표하며, 보건긴급상태 선언이 2021년 6월 2일에서 2021년 8월 31일에 수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음 - 에서 보건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휴가기간 동안 보건긴급상태의 국지적 선언 및 실시를 진행할 예외규정을 두었음.
- 마지막으로, 입법영향평가서가 채택한 선택으로서의 법률안은 국가의 대표자에게 검역 및 격리의 대상이 된 사람이 선택한 장소의 선택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보건법전 제L.3131-15조 및 제L.3131-17조의 II에서 규정한 검역 및 격리체제 변경을 규정하였음. 왜냐하면 검역 및 격리의 대상이 된 사람이 선택한 장소가 검역 및 격리 체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를 충족하지 않거나, 국가의 대표자의 통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새로운 법률안에 따라 국가의 대표자는 통제가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조치가 진행되는 장소를 정함.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현재까지는 해외령 지역에 도착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이었지만, 이제는 프랑스의 전체 지역에 적용되도록 하였음.³⁴⁾

34) 위의 책, 35-37면.

4. 채택한 법규정에 대한 영향분석

(1) 법적 영향

1) 국내법 질서에 대한 영향

- 입법영향평가서는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이 국내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특별한 분석을 하지는 않고 법률안의 개별 규정의 효력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즉,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영향평가서는 법률안 제1조는 법전화되지 않았으며, 보건긴급상태를 탈출하는 것을 조직하는 2020년 7월 9일 법률(LOI n° 2020-856 du 9 juillet 2020 organisant la sortie de l'état d'urgence sanitaire) 규정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서술함. 그리고 제2조 1은 법률안 제1조는 보건긴급상태가 적용 중에 있는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하며, 제2조 11는 여름휴가기간 동안 보건긴급상태의 국지적 적용을 허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고 서술함.
- 또한 입법영향평가서 제3조는 본 법률의 공포 후 1개월의 기간 동안 법률명령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4조 1.는 검역과 격리분야에서 공중보건법전 제L.3131-15조 제3항을 보충하며, 제4조 2.는 보건질서유지관련 규정위반을 확인하는 권한을 가지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보충하였으며, 제4조 3.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Polynésie française), 뉴칼레도니아(Nouvelle Calédonie), 왈리스 푸튀나(Wallis-et-Futuna)에 적용되는 공중보건법전의 내용을 수정하였다고 서술하였음.³⁵⁾

2) 국제법 및 유럽연합법과의 유기적 관련성

- 입법영향평가서는 법률안과 국제법 및 유럽연합법과의 유기적 관련성과 관련하여, 법률안에서 규정한 조치들은 국제법 및 유럽연합법, 특히 유럽인권재판소의 법과 치료에 대한 동의의 원칙을 규정한 Oviedo 협약(convention d'Oviedo)을 존중하면서 규정하였으며, 특히 디지털 녹색증명서(certificat vert numérique)에 대한 유럽연합차원의 논의를 고려하였다고 강조함.³⁶⁾

(2) 기타 영향

-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영향평가서는 이 외에도 법률안 제1조는 정부에게 이동, 시설의 개방, 모임 및 활동 분야에서 질서유지조치를 취할 권한만

35) 위의 책, 38면.

36) 위의 책, 38-39면.

부여하였으며, 이와 같은 권한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6월 1일 이후의 보건상황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리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 그렇지만, 입법영향평가서는 본 법률안에 따른 조치들이 취해질 경우에 이전에 비해 적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며, 지금까지 관찰된 보건상황의 변화로 볼 때 2021년 6월 1일 이후 여러 활동은 정상화될 것이며,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의 영향력 또한 완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³⁷⁾

5. 자문활동 및 적용방법

(1) 자문활동

- 입법영향평가서는 공중보건법전 제3편 제 I 권 제 III 절 제 1-2장의 규정은 보건긴급상태의 만료 이전에 과학위원회의 자문을 명하지 않았지만, 의회가 이와 관련된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정부는 임의적으로 과학위원회에 본 법률안이 채택한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다고 서술함. 그리고 과학위원회(comité de scientifiques)는 2021년 4월 21일에 자신의 의견을 공표하였으며, 6월 1일 이후 10월 31일까지 예방조치를 유지하는 보건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음.³⁸⁾

(2) 적용방법

1) 시간적 적용

- 입법영향평가서는 현재의 보건긴급상태가 2021년 6월 1일에 만료되며, 이에 따라 본 법률안은 2021년 6월 2일에서 10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보건긴급상태를 벗어나는 체제를 규정하였다는 점을 서술함.³⁹⁾

2) 장소적 적용

- 입법영향평가서는 법률안 제1조 1 내지 4는 프랑스 전국에 적용되지만, 여러 지방에서 관찰된 보건상황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는 조정될 수도 있다고 판단함. 이와 관련하여 입법영향평가서는 보건긴급상태를 벗어나도록 하는 체제는 수상으로 하여금 국토 전체 또는 일부분에 조치를 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수상에게는 지역적으로 권한이 있는 국가의 대표자에게 수상의 결정을 적용하는 일체의 일반적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하고, 그 자진이 도의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함.

37) 위의 책, 39-40면.

38) 위의 책, 40면.

39) 위의 책, 40면.

- 또한 입법영향평가서는 공중보건법전 제L.3131-15조 III과 2020년 7월 9일 법률(LOI n° 2020-856 du 9 juillet 2020 organisant la sortie de l'état d'urgence sanitaire) 제1조 III은 취해진 조치는 보건위기에 엄격하게 적합해야 하며, 시간 및 장소적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는 점을 환기시킴.⁴⁰⁾

3) 적용규범

- 입법영향평가서는 보건긴급상태를 벗어나는 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의 보고에 근거한 데크레의 제정이 필요하며, 수상이 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명령적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함.
- 그리고 입법영향평가서는 프랑스 헌법 제74조⁴¹⁾가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뉴칼레도니아에서 법률안 제1조 및 제2조가 규정하는 보건긴급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관리하는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법률명령(ordonnance)의 제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⁴²⁾

40) 위의 책, 40-41면.

41) 프랑스 헌법 제74조 “① 본조에서 규정하는 해외 지방자치단체들은 공화국내에서 각각의 고유한 이익을 고려한 지위를 가진다.

- ② 본조에서 규정하는 해외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위는 지방의회의 의견개진 후 채택된 조직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즉, 조직법률은
 - 법률·행정입법의 적용 조건;
 - 본조에서 규정하는 해외 지방자치단체들의 권한; 이미 해외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권한 외에, 국가는 필요한 경우 조직법률로 구체화되고 보완되는 제73조 제4항에 열거된 권한을 이양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직, 제도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의회 선거제도;
 -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을 포함한 정부제출법률안, 의원발의법률안, 법률명령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과 관련 있는 국제협약의 비준·승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조건을 정한다.
- ③ 조직법률은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 다음 사항의 조건도 규정할 수 있다.
 - 국사원은 지방의회가 법률의 영역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 개입하는 일정한 부류의 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사법적 통제권을 행사한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제소를 받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영역을 개입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의 발효 이후 공포된 법률을 변경할 수 있다.
 - 지역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된 조치들은 취업, 직업적 활동의 실시를 위한 거주권 및 토지재산의 보호의 영역에서 그 주민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감독 하에 공적 자유의 행사를 위해 국토 전체에 부여된 보장을 준수하면서 자신이 가지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본조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다른 구성방식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한 후에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변경된다.”

42) ETUDE D'IMPACT du PROJET DE LOI relatif à la gestion de la sortie de crise sanitaire, 2021, 41면.

4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 35 1. 프랑스 입법영향평가의 근거 및
입법영향평가서의 내용
- 37 2.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 제1조에서 제4조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서 검토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 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1. 프랑스 입법영향평가의 근거 및 입법영향평가서의 내용

(1) 프랑스 입법영향평가의 헌법적 및 조직법률적 근거

- 프랑스의 입법영향평가는 프랑스 헌법 제39조 제3항⁴³⁾에 근거하며, 프랑스 헌법 제39조 제3항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서 「헌법 제34-1조, 제39조, 제44조의 적용에 관한 2009년 4월 15일의 조직법률」(LOI organique n° 2009-403 du 15 avril 2009 relative à l'application des articles 34-1, 39 et 44 de la Constitution)이 제정되게 됨.
- 「헌법 제34-1조, 제39조, 제44조의 적용에 관한 2009년 4월 15일의 조직법률」은 제8조에서 입법영향평가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 진단, 추구하는 목적, 가능한 선택과 새로운 입법을 하는 이유, 새로운 규정의 예상가능한 영향, 자문활동, 개혁의 실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2) 프랑스 입법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입법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과 관련하여 프랑스 국정조정실(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이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한 안내서(vade-mecum)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43) 프랑스 헌법 제39조 “① 수상과 국회의원은 법률안 발의권을 가진다.

- ② 정부제출법률안은 국사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양원 중 한 원에 제출된다. 재정법률 및 사회보장자금 조달법률은 하원에 먼저 제출된다. 제44조 제1항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부발의법률안은 상원에 먼저 제출된다.
- ③ 하원 또는 상원에 제출된 정부제출법률안은 조직법률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른다.
- ④ 처음 법률안을 제출받은 원의 의장단회의가 조직법률에 의해 정해진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한다면, 정부제출법률안은 의사일정에 등록될 수 없다. 의장단회의와 정부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회의의장 또는 수상은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8일내에 결정을 내린다.
- ⑤ 양원의장은 법률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각 원의 구성원 중의 하나에 의해 제출된 의원발의법률안을 위원회의 검토에 앞서 각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국사원에 제출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진단(diagnostic)의 부분은 크게 해결해야 할 문제의 제기와 입법을 통한 개입의 정당화로 구분될 수 있음. 이 가운데 해결해야 할 문제의 제기의 항목에서는 문제되는 상황과 무엇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지를 살펴봐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문제와 문제의 범위, 문제의 원인, 정치적 및 제도적 상황의 묘사 등을 요구함. 그리고 입법을 통한 개입의 정당화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이유를 서술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입법이 없는 경우 초래될 상황, 왜 공권력은 문제되는 상황을 검토하고자 하는가 등에 대해 서술해야 함.
- 새로운 입법의 목적(objectifs poursuivis) 부분은 새로운 법규정의 제정 필요성을 엄격하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입법의 최종목적은 무엇인지, 새로운 입법의 구체적인 수단, 새로운 입법의 전략적 목적과 과도기적 목적 및 과도기적 목적이 어떻게 전략적 목적과 관련되는지, 새로운 입법의 성공조건에 대한 검토 등을 서술해야 함.
- 가능한 선택과 새로운 입법을 하는 이유(options possibles et les motifs du recours à une nouvelle législation)에서는 상위의 법규범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위의 규범이 없는 경우 선택적 수단을 검토해야 하며, 프랑스 헌법의 특징인 법률의 영역과 행정입법의 영역 간의 구분⁴⁴⁾도 고려해야 함. 구체적으로, 입법영향평가서는 선택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이들 여러 방안이 문제의 해결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각각의 방안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을 비교해야 하며, 법률안을 채택하게 된 이유와 한계 등에 대한 서술이 필요함.
- 새로운 규정의 예상가능한 영향에서는 새로운 입법의 법적 영향, 미시적 및 거시적 경제영향, 재정적

44) 프랑스 헌법은 법률의 영역과 행정입법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즉 프랑스 헌법 제34조는 “① 법률은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시민적 권리 및 공적 자유의 행사를 위해 시민에게 부여된 기본적 보장; 자유, 다원주의 미디어의 독립; 국방을 위해 시민에게 과하여진 신체 및 재산상 의무;
- 국적, 개인의 신분 및 법적 능력, 부부재산제, 상속 및 증여;
- 중죄 및 경죄 및 위법행위의 결정과 그에 대한 형벌; 형사소송절차; 사면; 새로운 심급의 법원 설치와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규정;
- 모든 주세의 과세기준, 세율, 징수방식; 화폐발행제도.

② 법률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 의회, 지방의회, 재외프랑스인의 대표부,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 구성원의 선거위임과 선거기능의 행사조건;
- 공공기관의 설립;
- 국가의 일반공무원 및 군공무원의 신분보장;
- 기업의 국유화 및 공기업의 민영화;

③ 법률은 다음사항의 기본원칙을 정한다.

- 국방조직;
- 지방자치단체의 자유행정, 권한, 자원;
- 교육;
- 환경보존;
- 재산권, 물권, 민간채권, 상업채권;
- 노동권, 노동조합권, 사회보장권. …”라고 규정함에 반하여,

프랑스 헌법 제37조는 “① 법률의 소관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입법의 성격을 가진다.

② 행정입법에 속하는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은 국사원의 의견청취 후 명령을 발하여 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본 헌법의 발효 이후에 제정된 법률이 전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입법의 소관사항에 속한다고 선언하는 경우에 한해 명령으로써 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영향(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 사회적 영향, 환경적 영향(기후를 위한 비용이나 생물다양성) 등을 기재해야 함.

- 자문활동에서는 입법영향평가서가 국사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의무적 또는 필수적 자문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의무적 자문의 경우 자문 요청사항과 자문결과를 명확하게 서술해야 함.
- 새로운 입법을 통한 개혁의 실행(mise en oeuvre de la réforme)에서는 새로운 입법이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데크레의 목록이 기재되어야 함.⁴⁵⁾

2.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 제1조에서 제4조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서 검토

- 프랑스 국정조정실(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이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한 입법영향평가서의 내용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안의 내용이나 목적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변화의 여지는 있으며, 이점을 고려하여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영향평가서에 대해 간단히 검토하고자 함.
-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영향평가서는 진단의 부분에서 보건긴급상태 및 보건긴급상태에서 이탈하는 법률과 행정명령에 대한 전체적 조망을 서술하며, 나아가 보건긴급상태와 관련된 소송상황에 대한 객관적 정리를 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입법연혁에 대한 서술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서술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서술 방법의 측면에서도 내용의 상당부분이 법률이나 행정명령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적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됨.
-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및 목적의 부분과 관련하여, 본 입법영향평가서는 2021년 6월부터 보건질서유지조치를 완화하고 동시에 일정한 경우 보건상황이 국지적으로 악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가 보건긴급상태에 관한 권한을 유지할 필요성만 강조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입법의 최종목적, 새로운 입법의 구체적인 수단, 새로운 입법의 전략적 목적과 과도기적 목적 등에 대한 서술은 미흡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엄격하고 정확한 서술의 요청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됨.
- 가능한 선택과 새로운 입법을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본 영향평가서는 고려될 수 있는 선택으로 일반법 체제를 따르는 것과 새로운 비상사태를 도입하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하였으며, 현재의 보건긴급상태를 연장하지 않으면서 과도적으로 제한적인 기간 동안 일정한 특별한 수단을 정부가 가지는 방안을 채택하였음. 따라서 본 영향평가서는 선택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문제의 해결에 어떤

45) 한동훈, 프랑스의 영향평가제도, 공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2012, 89-96면; 윤계형/한동훈, 프랑스 입법평가의 방법론 및 사례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51-59면 참조.

기여를 하는지의 측면에서 각각의 방안에 대한 장점 및 단점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택한 법률안의 한계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채택한 법규정에 대한 영향분석과 관련하여, 본 입법영향평가서는 국내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법 및 유럽연합법과의 유기적 관련성에 대해서 특별한 분석 없이 법률안의 내용을 간략히 환기시키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본 입법영향평가서의 내용은 법적 영향에 대한 간략한 언급에 그치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의 경제적 영향, 재정적 영향,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분석의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자문활동과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본 입법영향평가서는 의무적 자문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되며,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수상의 데크레나 법률명령의 필요성의 언급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입법의 구체적 적용을 위한 데크레의 목록 작성의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Chapter

5



맺음말

-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일시적 소강상태에 대처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입법영향평가서 또한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법률안 자체의 내용 및 목적에 따라 입법영향평가서의 내용구성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영향평가서는 전체적으로 양질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서술의 측면, 가능한 선택과 새로운 입법을 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적 기술의 측면, 채택한 법규정에 대한 치밀한 영향분석의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됨.
- 이와 같은 「프랑스의 보건위기의 탈출을 관리하기 위한 2021년 5월 31일 법률안」의 입법영향평가서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상황의 긴급성과 법률안의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률규정을 수용하였다는 점으로 일부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프랑스의 경우 법률안을 실제로 제출하는 정부부처가 입법영향평가서 작성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영향분석보다는 법률안 자체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제도적 결함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참고문헌

- ETUDE D'IMPACT du PROJET DE LOI relatif à la gestion de la sortie de crise sanitaire, 2021.
- 강지은, 프랑스의 비상사태(État d'urgence) - 비상사태의 선포 및 그에 따른 행정적 조치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5집 제4호, 2017.
- 박인수, 프랑스 제 5공화국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 전남대학교 논문집 제 35집(법, 행정학편), 1990.
- 박인수, 프랑스의 법률명령에 관한 소고, 금량 김철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3.
- 윤계형/한동훈, 프랑스 입법평가의 방법론 및 사례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 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 법령용어집, 2008.
- 한동훈, 프랑스 헌법상 권력구조, 헌법재판연구원, 2020.
- 한동훈, 프랑스의 영향평가제도, 공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2012.

2. 인터넷 주소

- <https://www.assemblee-nationale.fr/>
-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
- <https://www.gouvernement.fr/info-coronavirus#questions>
- <https://www.legifrance.gouv.fr/>

입법평가 ISSUE PAPER 22-14-④

프랑스 코로나19 보건위기의 탈출관리를 위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의 사례연구

발행일 2022년 10월 31일

발행인 김계홍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 861. 0300 | F. 044. 868. 9913

등록번호 1981. 8. 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프랑스 코로나19 보건위기의 탈출관리를 위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의 사례연구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 861. 0300 F. 044. 868. 9913

